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서욱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003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적금의 정부지원 등 국가 재정지원의 범위 신설 (안 제158조의4)

나. 적금의 정부지원 관련 재정지원의 정의 규정
(안 제158조의4제①)

1)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는 적금 만기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은행의 금리에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정함.

나. 적금의 정부지원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의 필수서류를 규정
(안 제158조의4제②)

1)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1% 재정지원을 적용받으려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해지시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에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함.

다. 적금의 정부지원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의 배제 및 특례를 규정
(안 제158조의4제③)

1)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며,
다만, 조기전역 등의 계약 해지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정함.

라. 적금의 정부지원의 구체적 방안을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
(안 제158조의4제④)

1) 이외 사항은 국방부장관·병무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해양

경찰청장·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약을
통해 규정하도록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5. 1. ~ 6. 9.)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4(적금의 정부지원) ① 법 제79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②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이 해당 적금이 만기되어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에 제5조에 따른 전역증(병역증) 또는 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대체역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복무사실 확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해당 적금 계약의 만기일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5제4항에 따른 계약해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병무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해양경찰청장·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5①항의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5①항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10.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8조의4(적금의 정부지원) ①</u> <u>법 제79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u> <u>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u> <u>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u> <u>금(이하 “장병내일준비적금”이</u> <u>라 한다) 가입일부터 만기일까</u> <u>지 납입금액 건 별로 실제 예치</u> <u>일수 기간 동안 연 1% 이율을</u> <u>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u> <u>다.</u> <u>②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u> <u>사람이 해당 적금이 만기되어</u> <u>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u> <u>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적금</u> <u>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에 제5</u> <u>조에 따른 전역증(병역증) 또는</u> <u>제155조의7에 따른 병적증명서</u> <u>(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u> <u>경우에는 대체역법 제16조제1</u> <u>항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의 장이</u> <u>발급하는 복무사실 확인서를 말</u> <u>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u> <u>③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u>

가 해당 적금 계약의 만기일 전
에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
5제4항에 따른 계약해지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재정지원에 필
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병무
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해
양경찰청장·소관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복지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6611